

법관 시진국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의자 : 000 의원 외 00인

주 문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시진국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시진국

직위 : 법관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시진국(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 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피소추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경우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 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임종현(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 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2003. 1.경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하여, 2003. 2.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4. 2. 법원행정처 기획 제2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고, 2015. 2. 법원행정처 기획 제2심의관에서 기획 제1심의관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었으며, 2016. 2.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의 직위에 대한 겸임이 해제되었다. 피소추자는 2019. 1.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2. 피소추자의 행위

가.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임종헌 공소장 33쪽 내지 34쪽)

- 1) 2014. 11.경 당시 법원행정차장이었던 임종헌은 피소추자에게 2013. 12. 1.자 외교부 작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의 함의와 국가적 부담'보고서와 2014. 11. 3.자 사법지원실 작성 '일제 식민지 시대 관련 과거사 사건 계류현황' 보고서를 건네주면서, '이 보고서를 요약·반영하여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손해 배상청구 소송 현황 및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진행경과,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우리나라 외교부의 입장, 배상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국가적 부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

해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2014. 11. 10.경 위
외교부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련보고'라는
제목의 기획조정실 명의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에게 보고하였다.

2) 그 문건에는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입장', '배상판결 확정 시 예상되는 국
가적 부담(외교부 견해)', '대법원 계류사건에서의 향후 전개 방향 예측' 등을
검토한 내용이 있고, 특히 '대법원 계류사건에서의 향후 전개 방향 예측'부분 에
는 5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재상고기각', '대법원 소부에서 새로운 쟁점
에 대해 판단하고 환송', '대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 시도', '대법원이 사법자제
론에 기한 판단', '전원합의체에서 판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었던 바, 이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국가적 부담이 된다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절차 및 결론
을 검토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고, 재상고심 재판의 절차 진
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3) 이로써 피소추자는 박병대 및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진행
중인 상고심 재판과 관련한 청와대 및 외교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법관의 재외
공관 파견 등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대법원 재판부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절차 진행, 처리 시기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나.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임종헌 공소장 41쪽 내지 44쪽)

1) 임종헌은 2015. 12. 31.경 기획조정실 심의관이던 피소추자에게 강제징용 재
상고 사건과 관련하여 심리불속행 여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등 검토 사례를
언급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 사건 청구권은 주권 면제, 통치행위론, 한일

위안부 합의, 소멸 시효 등으로 인해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소멸시효를 인정한 2012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소부(小部) 판결로서 문제가 있다. 청와대 및 외교부와의 관계는 국제사법공조뿐만 아니라 법관의 해외공관 및 국제기구 파견 등 대법원이 추진하는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중요하므로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의 소각하 내지 청구기각의 논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등의 외교부 입장을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도 반영시킬 목적으로 피소추자가 2014. 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를 검토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련보고' 보고서를 조인영의 이메일로 송부하고, 국제심의회 김창모가 2015. 10. 19.경 외교부로부터 받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외교부 의견서 초안을 조인영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 2) 이로써 피소추자는 임종현의 지시를 받아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기획조정실 심의회 조인영에게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추진 현안에 대해 청와대 및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도록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조인영으로 하여금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임종현 공소장 63쪽 내지 70쪽)

- 1) 2014. 4. 16.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치권 및 여론의 비판과 공분이 고조되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8. 3.경 카토 타쓰야 前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일본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자, 자

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8. 6.경 카토 타쓰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8. 7. '카토 타쓰야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대처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는 카토 타쓰야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¹⁾(이하 '카토 타쓰야 사건')이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자, 현직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이고 전 국민적 관심사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핵심 쟁점이므로 재판 결과가 국정에 미칠 정치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중요사건으로 관리하였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위상 강화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카토 타쓰야 사건의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청와대에 적극 협조하기로 계획하였다²⁾.

3) 임종헌은 2015. 3. 하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임성근에게 카토 타쓰야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계획을 전달하며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카토 타쓰야가 게재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달라. 법원행정처에서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임성근은 그 무렵 재판장 이동근에게 그러한 요청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임종헌은 2015. 11. 중순경 임성근으로부터 '이동근이 판결이유 및 선고 시 구술 내용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수긍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무죄 판결 선고에 대한 정치권 등 외부의

1)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72', 피고인 '카토 타쓰야',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공소사실 요지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던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희와 함께 있었다'는 허위의 기사를 일본 산케이신문에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임

2) 피고인이 2015. 3.경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등을 통하여 위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분위기와 요청사항 등을 확인하던 중, 비서관실 ○○○가 '카토 타쓰야가 신청한 출국정지 기간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 결정이 2015. 4. 15.까지 연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2015. 2. 13. 1심에서 기각되어 카토 타쓰야의 항고로 항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으나 특별한 쟁점이 없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위 사건은 2015. 4. 15.까지 항고심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실제로 ○○○ 비서관실의 요청대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 ○○○, 서울고등법원 기획법관 함윤식 등을 통해 위 항고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음

불만에 대응할 목적으로, 11. 16.경 피소추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죄 판결의 주된 이유와 명예훼손의 법리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그 무렵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에게 연락하여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요약한 자료를 전달받고, 그 자료와 피고인이 임성근을 통해 이동근 재판장으로부터 받은 '예상 선고결과 및 판결 이유' 등이 기재된 자료를 토대로 '카토 타쓰야 前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설명자료'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청와대, 국회 등 대외기관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위 설명자료는 판결 선고일 이전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허위인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 바, 대외기관 대응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절차와 결론을 미리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5) 피소추자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카토 타쓰야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 등이 기재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자료를 작성하였다.

라.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사건(임종헌 공소장 152쪽 내지 155쪽)

1) 임종헌, 양승태, 박병대는 인터넷 카페 등에 법관들이 익명으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법원 내부적으로도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상고법원 도입 등 각종 사법정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였고, 마침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불만사항이 다수 포함 되어 있는 ‘이판사판 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이하 ‘이사야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사야 카페의 활동을 저지하고 종국적으로는 카페를 와해시킴으로써 법관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저지하고 게시된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막기로 계획하였다.

2) 임종현은 2015. 2.경 피소추자에게 ‘익명게시판 카페에서 활동 하고 있는 법관 및 게시글의 동향을 파악하고, 게시글의 외부 공개를 막고 카페를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소추자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임종현이 지시한 이사야 카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2015. 2. 14.자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문건에는 자발적으로 이사야 카페에 가입한 판사들의 게시글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 중에서 ‘상고법원 설치’, ‘원세훈 형사사건 선고’, ‘박상옥 대 법관 후보자 임명제 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카페글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 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러한 이사야 카페에 대한 구체적 대처 방안으로 ‘카페 폐쇄 등 유도’,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 게시’,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 유도’, ‘소속 법원장이나 믿을 만한 선배 여성 법관 등을 통해 홍예연 판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우려 의사 전달’ 등의 ‘자발적 조치’와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 및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제7호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하는 ‘강제적 조치’ 등을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이로써 피소추자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이사야 카페의 활동을 저지하고 종국적으로는 카페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카페에 가입한 판사 신분의 회원들의 게시글에 대한 분석 및 부정적 평가와 함께 카페 폐쇄 유도 등 구체적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등 법관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 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본다.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

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 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의 행위는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크게 1)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2)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관련, 3)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4)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사건 관련, 5)대한변협 등을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등으로 나뉘는바,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1)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행위

피소추자는 박병대 및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진행 중인 상고심 재판과 관련한 청와대 및 외교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대법원 재판부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절차 진행, 처리 시기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 재판 진행에 대해 검토하게 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행정처의 행정작용과 대법원의 재판작용은 엄격히 분리되어야만 재판작용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의 위와 같은 관여는 대법관의 재판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의 문건 작성 행위는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작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2)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관련 행위

피소추자는 임종현의 지시를 받아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기획조정실 심의관 조인영에게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추진 현안에 대해 청와대 및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도록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조인영으로 하여금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 또한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보고서 작성행위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 재판 진행에 대해 검토하게 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행정처의 행정작용과 대법원의 재판작용은 엄격히 분리되어야만 재판작용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의 위와 같은 관여는 담당 대법관의 재판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의 문건 작성 행위는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작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3)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행위

피소추자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카토 타쓰야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 등이 기재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자료를 작성하였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문건은 부적절한 재판 개입행위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작성 행위 또한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즉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4)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사건 관련 행위

피소추자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이사야 카페의 활동을 저지하고 종국적으로는 카페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카페에 가입한 판사 신분의 회원들의 게시글에 대한 분석 및 부정적 평가와 함께 카페 폐쇄 유도 등 구체적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등 법관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관의 독립, 법관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개별 문건에 따라 그 작성행위 하나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도, 피소추자가 임종헌 등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헌법상 재판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에 반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4. 탄핵의 정당성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판사에서,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이들은,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어 나중에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법원장,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

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시진국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임종헌 공소장